KWDI
해외통신
2022년 5월 (2022.5.1 ~ 5.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정부, 일·가정양립법 추진

곽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새로운 일·가정양립법(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일·가정양립 지침(Work Life Balance Directive)에 발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 확대는 이 법안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이다.

- 유럽연합(EU)은 일·가정양립(EU rights to work-life balance)을 규범화하여 공표했는데, 여성은 최소 14주 출산휴가 (국가별로 최소 병가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최소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최소 4개월 육아휴가,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한 연간 5일간의 돌봄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육아휴가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근무 장소 선택(재택근무) 등을 포괄한다. 유럽연합(EU) 측에서는 올해 8월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럽연합 일·가정양립 지침(directive)에 맞춰 회원국들이 법적 기반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일·가정양립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안에 대해 로데릭 오고먼(Roderic O'Gorman) 평등정책 장관(Minister for Equality)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와 양육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 양립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고먼 장관은 이번 법안이 늦어도 2022년 7월 말까지는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하고 8월부터 발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본 법안 주요 조항들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보호자의 유연근무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근로시간 축소 또는 유연근로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는 2015년 설립된 독립기구로, 고용 및 근로와 관련된 법률 이행 모니터링, 갈등 중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유연근무를 요청해야 하고, 고용주는 4주 내로 답변해야 한다. 둘째, 5일간의 무급 병가는 자녀 또는 현재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돌봄을 위해 고용주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를 수유 휴식시간 확대이다. 우선 현재 아일랜드의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s)에 의거하여 4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6주 유급, 16주 무급휴가이다. 또한 모성보호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자녀에게 수유할 권리가 있다. 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고용주는 별도의 수유 공간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26주 동안 하루 1시간을 수유를 하거나 모유를 유축할 수 있으며, 주어진 1시간은 20분 3회, 30분 2회와 같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 기존 모성보호법에서도 모유 수유 시간이 임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며, 수유실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에서 수유시간을 일정 부분 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서는 근로에 복귀하면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간을 26주에서 104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여성근로자는 모유 수유를 매일 1시간, 6개월간 모유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유급이다. 본 법안이 제정되면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새 법안이 고용주, 피고용자 양측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네일 맥도넬(Neil McDonnell) 아일랜드 중소기업연합회 회장(chief executive of the Iris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sociation)은 이번 법안에 대해 "온갖 유형의 휴가 제도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하면서 정작 비즈니스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또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 리처드 그로건(Richard Grogan)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체인력이 없거나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바쁜 경우, 실제로 본 법안이 명시하는 유연근무제 같은 조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5일 무급병가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중대한 의료적 사유' 조항이 모호할 수 있는데, 진단서 발급을 증거로 인정할지, 부모가 자녀가 아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만약 5일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로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아일랜드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일부 직군이나 기업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그리고 노동당(Labour Party)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리 셜록(Marie Sherlock) 상원의원 겸 노동당의 고용·예술·문화·미디어·게일어 사용지역(Employment Affairs, Arts, Culture, Media and the Gaeltacht)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근시안적이며, 일·가정양립이 비단 자녀가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므로 자녀가 12세가 넘어도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 정부가 상정한 법안이 만약 제정된다면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분명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 근로자의 수유 권리 대폭 확대이다.

- 이번 법안에서 일부는 아직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측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법안이 담게 될 최종 세부내용과 제정 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BreakingNews.ie (2022.4.23.) "Work Life Balance Bill has potential to be 'nightmare for employers and employees" https://www.breakingnews.ie/ireland/work-life-balance-bill-has-potential-to-be-nightmare-for-employers-and-employees-1293845.html (접속일: 2022.5.23.).
- European Commission "EU rights to work-life balance"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women-labour-market-work-life-balance/eu-rights-work-life-balance_en (접속일: 2022.5.23.).
- Independent(2022.4.21.)"Workers will be able to take case against employers who refuse reduced or flexible hours requests under new legislation" https://www.independent.ie/irish-news/news/workers-will-be-able-to-take-case-against-employers-who-refuse-reduced-or-flexible-hours-requests-under-new-legislation-41572285.html (접속일: 2022.5.23.).
- Irish Government "General Scheme of a 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 https://www.gov.ie/en/publication/1105a-general-scheme-of-a-work-life-balance-and-miscellaneous-provisions-bill-2022/ (접속일: 2022.5.23.).
- Maternity Protection (Amendment) Act 2004 (2004)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4/act/28/enacted/en/pdf (접속일: 2022.5.23.).
- RTE (2022.4.21.)"Work Life Balance Bill brought to Cabinet" https://www.rte.ie/news/business/2022/0421/1293450-work-life-balance-bill/ (접속일: 2022.5.23.).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교육기관내의 성차별 금지법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미국에서는 1972년 타이틀 9(Title IX)라는 연방법(이하 타이틀 9법)을 개정하여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타이틀 9법에 의하면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 등의 활동으로부터 성별(sex) 때문에 참여가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혹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지방(Local) 및 주(State) 교육기관,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적용된다.

- 현재 타이틀 9법의 보호 범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을 기반으로 하는 괴롭힘, 임산부 학생 혹은 육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 LGBTQI+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타이틀 9법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성차별 금지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차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혹은 연방 법원에 그 기관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긴 기관의 경우 연방정부의 펀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틀 9법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 남녀 성인 대부분(63%)은 이 법이 성평등(gender equality)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37%는 여전히 해당 법이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남성 46% vs. 여성 29%). 여성 선수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2). 아직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 9법이 성평등 향상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CNN (2022.2.10.) "Harvard faces Title IX lawsuit after 3 students claim sexual harassment, abuse and retaliation by professor" https://www.cnn.com/2022/02/10/us/harvard-title-ix-lawsuit/index.html (접속일: 2022.5.6.).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1.6.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nfirms Title IX Protects Students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confirms-title-ix-protects-students-discrimination-based-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 (접속일: 2022. 5.6.).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여성 청소년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무료월경제품계획(Free Period Product Scheme; 이하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인력위생서비스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s)이 실시한 월경 형평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35%의 여성 청소년이 월경 문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 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재정 부족으로 월경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2차 성징 과정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월경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영국의 공립학교와 교육과 기술 후원기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의 후원을 받는 16-19세의 청소년 교육기관(16 to 19 institutions)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13,822개의 기관이 월경제품을 무료지급 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초등 교육기관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여 초등 교육기관의 61%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월경제품의 보편적인 제공이 아닌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정책 시행 이후, 월경제품의 주문량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23% 증가 하였고, 친환경 제품과 재사용 제품의 구매율은 48% 증가하였다. 최근 영국정부는 본 정책을 2022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자격조건과 공급체계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예상치 못하게 월경을 시작했거나, 월경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제품을 챙겨오지 못한 모든 여성, 논바이너리(non-binary),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수혜대상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월경제품을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경우, 16-18세에 시작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교육건강보육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교육기관은 월경제품을 전체 여학생의 약 35%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까지 주문할 수 있고, 향후에 주문량을 조절 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월경제품으로는 일반 월경대, 친환경 재사용 월경대, 면 월경대, 탐폰, 그리고 월경 컵으로 해당 기관의 여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기관들이 연 2회 월경제품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문 후 5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무료지급 하는 월경제품의 재고관리, 배송, 그리고 기관관리 서비스는 인력위생서비스 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 이하 PHS)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교육기관에서 월경제품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 들지 않게 배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기관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에 더하여, 도서관이나 학생서비스 공간에 비치하여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월경제품이 필요할 때 학생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접근장벽이 높고, 오히려 또래 학생인 학생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구역에서 쿠폰으로 월경제품을 자판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월경제품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품을 배급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월경 경험자들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방식 외에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월경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월경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영국에서 아직도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월경을 둘러싼 낙인과 금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낙인과 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고, 학생들이 월경제품을 수치심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교육기관이 학생들과 월경에 관한 논의하고 기관 곳곳에 월경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월경에 대한 열린 대화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0년 9월부터 영국에 있는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보건 수업의 일환으로 월경과 월경기 안녕(menstrual well-beng)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의 기한이 2022년 여름까지로 이후의 정책방향이나 기한에 대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GOV.UK (2022.1.27.) "94% of secondary schools provide free period products to studen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94-of-secondary-schools-provide-free-period-products-to-students#:~:text=In%20total%2C%2013%2C822%20individual%20organisations,90%25%20of%20post%2016%20organisations. (접속일: 2022.4.17.).
- GOV.UK. (2021.11.21.)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in-schools-and-colleges/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in-england (접속일: 2022.4.17.).
- GOV.UK. (2022.1.27)"How the Period Producs Scheme is removing barriers in education"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2/01/27/how-the-period-products-scheme-is-removing-barriers-in-education/ (접속일: 2022.4.18.).
- GOV.UK (2021.11.26.) "Free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extend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free-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extended (접속일: 2022.4.18.).
- PHS (2021) "PHS group period equality whitepaper" https://www.phs.co.uk/media/2907/96671-phs-group-period-equality-whitepaper_uk-v3.pdf (접속일: 2022.04.18.).

아일랜드 IRELAND

아일랜드, 디지털 성범죄를 EU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정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는 큰 문제이며, 이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도 포함된다. 아일랜드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불법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수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큰 이슈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일찍이 논의한 국가들이다. 반면, 아일랜드는 영국과 미국에 비해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제정했으나,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 처벌수위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일명 "코코법"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 만명의 서명을 얻은 한 사건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아일랜드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에 관한 정책을 살펴본다.

-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의 내용
  - 아일랜드 노동당은 오랜 시간 온라인 학대,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와 같은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형법상 처벌하는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이 되어서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은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라는 여성이 경찰이 불법으로 유포한 본인의 나체 영상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던 해이다.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는 정신질환과 중독 증세로 인해 나체로 거리를 걷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동행하던 경찰이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였다.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를 불법 촬영물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21세의 나이에 자살한 니콜 코코 폭스 (Nicole Coco Fox)를 기리는 뜻으로, "코코법(Coco's law)"으로도 불린다.
  - 해당 법안에서 불법 촬영물은 사람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거나, 인체의 사적인 부위 또는 속옷으로 해당 부위가 가려진 사진 모두를 포함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도 불법 촬영물로 간주한다.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를 한 경우에 불법 유포로 정의한다.
  - "코코법"은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한다. 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자로 무한정의 벌금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유포자는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5천 유로(한화 약 676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가해자의 전 애인일 경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에 처한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 지원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정부 주도의 핫라인 운영
  -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을 목격했거나,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인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주관하는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아일랜드 정부, 법무부, 아동복지 기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철저한 신변보호를 받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핫라인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담당한다.
  - 핫라인으로 제보가 되면, 필요한 경우 아일랜드 경찰청에서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아일랜드 경찰서에는 부문별 보호 서비스 부서(Divisional Protective Services Unit)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부서에는 성범죄 또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적절하고 민감하게 면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한 특별 상담 서비스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 아일랜드에서는 "코코법" 제정 이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총 144건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핫라인에 접수되었다. 이들 중에서 74%의 피해자가 해당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요청된 불법 촬영물 중에서 95%를 완전히 삭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이 핫라인 제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유포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환경경찰뉴스 (2019.7.26.)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제도적 대응 실태-Ⅱ.영국" 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 (접속일: 2022.5.15.).
- BBC News (2021.10.06.) "Dara Quigley: Irish minister apologises to family over CCTV leak"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58815489 (접속일: 2022.05.18.).
- Change.org (2020) "Make revenge porn a criminal offence in Ireland" https://www.change.org/p/irish-justice-department-make-revenge-porn-a-criminal-offence-in-ireland (접속일: 2022.5.15.).
- Department of Justice (2021.9.2.) "Minister Hildegarde Naughton launches new campaign to combat sharing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victims can now report illegaly shared images" https://www.gov.ie/en/press-release/94e75-minister-hildegarde-naughton-launches-new-campaign-to-combat-sharing-of-intimate-images-without-consent/#:~:text=Launching%20the%20campaign%2C%20Minister%20of,emotional%20and%20mental%20health%20effects. (접속일: 2022.5.23.).
- Department of Justice (2022.4.1.) "Intimate Image Abuse" https://www.gov.ie/en/policy-information/35bec-intimate-image-abuse/ (접속일: 2022.5.23.).
- GOV.IE (2021.2.9.) "Minister McEntee marks Safer Internet Day by commencing Coco's Law" https://www.gov.ie/en/press-release/706c9-minister-mcentee-marks-safer-internet-day-by-commencing-cocos-law/# (접속일: 2022.05.18.).
- Hotline.ie (2022) "Irish national centre combatting illegal content online" https://www.hotline.ie/home/ (접속일: 2022.5.18.).
- Houses of the Oireachtas (2020.12.28.)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2020"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17/63/ (접속일: 2022.5.15.).
- Human Rights Pulse (2021.2.23.)"Criminalising Online Sexual Abuse in Ireland: A Further Step Towards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s://www.humanrightspulse.com/mastercontentblog/criminalising-online-sexual-abuse-in-ireland-a-further-step-towards-ensuring-the-protection-of-human-rights (접속일: 2022.5.15.).
- IrishCentral (2020.11.20.) "More than 40k sign petition to make revenge porn a crime Ireland" https://www.irishcentral.com/news/revenge-porn-ireland (접속일: 2022.5.15.).
- POLITICO (2020.12.17.) "Ireland brings in tough laws on revenge porn and online bullying" https://www.politico.eu/article/ireland-brings-in-tough-laws-on-revenge-porn-and-online-bullying/ (접속일: 2022.5.16.).
- RTE (2022.3.14.) "144 reports of intimate image sharing since September" https://www.rte.ie/news/ireland/2022/0314/1286328-image-sharing/ (접속일: 2022.5.23.).

일본 JAPAN

일본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방지노력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머니날과 함께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휴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가정 내 폭력의 신고 사례는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상기해 볼 때,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도메스티크·바이오렌스-앞의 용어를 가타카나로 적은 모양)'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각부 산하의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同参画局)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치된 정의는 없으나, 일본 내에서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폭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자 간의 폭력이라도 형법 제204조의 상해나 제208조의 폭행에 해당하며, 정신적 폭력이라도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형법상의 상해로 간주될 정도의 정신 장애에 이를 경우,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간의 강제 성교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77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일본에도 가정폭력문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통상 DV방지법)이 성립되었다. 이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의원에 설치된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에 소속된 초당파 여성의원들에 의해 입법되었다.

-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사회 통념과 부부간의 경제적인 격차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문제는 법안의 입안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법을 입안시키려는 논의가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자, 남성의원들로부터 "그런 집안의 일을 국회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등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유엔의 인권에 관한 회의 등에서 문제가 되고, 관련하여 일본도 출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는 등의 국제적인 상황과, 2000년의 일본 총리부(현재의 내각부)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2.7%(여성 4.6%, 남성 0.5%)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정도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입안되었다.

- 해당 법의 전문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범죄라고 명시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란 배우자에 의한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하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로부터 계속 받는 폭력을 포함한다. 해당 법률에서의 피해자는 배우자에 의하여 폭력을 당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사실혼관계에서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피해자 개인 (대부분 여성, 특히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남녀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며, 인권옹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대응에 부합된다고 되어 있다. 즉, 해당 법에 의해 일본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일본의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여성을 보호해주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 해당 법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 통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적절한 보호를 도모할 책무, 2)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의 수행, 여성상담원에 의한 상담, 부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3) 피해자의 보호(가정폭력 피해 발견자에 의한 통보,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경찰관의 가정폭력 피해 방지 조치 강구 노력,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복지사무소에 의한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피해자로부터의 신고가 있을 시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 4) 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목을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따라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이 책정 및 공표되고 있다.

- 해당 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 자녀와 전배우자까지 보호명령 대상 확대(2004년), 2)보호명령 확충 및 시·읍·면의 기본 계획의 책정과 가정폭력센터관련 부분 개정(2007년), 3)배우자뿐 아니라 교제 상대로부터의 피해도 보호(2013년)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의 개정에서는 4)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관계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 명문화 및 그 보호의 적용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반 가족 포함까지 명시되었다(2019년).

- 해당 법의 성립으로 인해 그 이전까지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적인 곳에서 도움을 얻기 곤란했던 가정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센터 및 제도의 신설 및 운용으로 문제에 직면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 그러나 2019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으로는 1) 통보·보호 명령의 대상을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과 성폭력으로 확대, 2) 보호 명령의 신속한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 제14조 1항에 예시를 추가하여 무심신(無審尋) 발령 요건을 명확화, 3) 가해자 갱생에 관한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의 기재사항으로서 「가해자 갱생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빈곤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는 새 법의 제정을 위하여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공적지원제도는 1956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매춘을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의 보호 갱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성립되었을 때 기존의 성매매방지법 개정하여 여성상담소를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왔으나,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처음으로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초당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해당 법의 목적으로 '여성 복지 증진'과 '인권 존중'을 명기하였다. 또한, 여성 지원을 지방자치체의 책무로 하여, 도도부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세밀한 지원이 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 관계기관이 지원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설치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상담 대응과 설 자리 확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해당 법은 4월 13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되어 중의원에 송부된 후 중의원에서 5월 19일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해당 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된다.

- 일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하며,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장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번 국회에서 성립된 신법률안의 시행과 향후 DV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내각부(内閣府) "「国民の祝日」について" https://www8.cao.go.jp/chosei/shukujitsu/gaiyou.html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配偶者からの暴力に関するデータ"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ata/01.html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とは－暴力の形態"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v/02.html (접속일: 2022.5.17.).
- 由希(2012) 『家族主義福祉レジームの再編とジェンダー政治』 ミネルヴァ書房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DV)とは"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v/index.html (접속일: 2022.5.17.).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3.15.) "DV被害者増加 さらなるDV防止法改正を"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20313/pol/00m/010/002000c (접속일: 2022.5.17.).
- 법령,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3AC0100000031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1.10.1) "都道府県における配偶者暴力防止法に基づく基本計画の策定状況について"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pdf/kihon_to.pdf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1.10.1) "市区町村における配偶者暴力防止法に基づく基本計画の策定状況について"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pdf/kihon_shi.pdf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配偶者暴力防止法の令和元年一部改正情報"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dv0106.html (접속일: 2022.5.17.).
-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2021.8.5.) "【ジェンダー平等推進本部】DV被害者支援を考える(2)" https://cdp-japan.jp/news/20210727_1834 (접속일: 2022.5.17.)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4.3.) 동경조간 5면 내정면 「社説：困難抱える女性の支援 実態に即した新法実現を」 毎索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https://mainichi.jp/contents/edu/maisaku/login.html (접속일: 2022.5.23.).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4.12.) "「売春防止」からようやく脱却 女性支援新法案 超党派で成立へ"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20409/pol/00m/010/004000c (접속일: 2022.5.17.).
- 시사통신사(時事通信社) (2022.3.22.) "女性支援計画義務付け 貧困・DVで都道府県に一議員立法"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32100380&g=pol (접속일: 2022.5.17.).
- 일본참의원(参議院)(2022.5.19.) "議案情報 第208回国会(常会)"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08/meisai/m208100208007.htm (접속일: 2022.5.20.)
- 아사히신문(朝日新聞)(2022.5.19.) "困難抱える女性の支援強化 新法成立 66年前の売春防止法から脱却" https://www.asahi.com/articles/ASQ5M5VTDQ5MUTFL008.html (접속일: 2022.5.20.).
- 일본중의원(衆議院) "議案審議経過情報"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keika/1DD58FA.htm (접속일: 2022.5.20.).